

강북복지용구·의료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제2장 시설의 운영

제1조(사업목적)

노인성 질환 및 고령 또는 중증 장애로 거동과 생활불편으로 인한 등급판정 이용대상자에게 복지용구를 제공하여 신체적 재활과 근육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여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한다.

제2조(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)

사업을 행하는 기관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명칭 : 강북 복지용구·의료기
- ② 소재지 :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20길 53

제3조(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)

- ① 이용정원은 시설에 규정된 복지용구 사업의 특성상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.
- ②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 - 1.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
 - 2. 노인성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에 따라 등급을 받은 자
- ③ 모집방법은 관내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하여 모집하고, 지역사회 자원봉사와 함께 진행한다.

제4조(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)

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복지용구를 제공한다.

- ① 구입 및 대여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다.
- ② 복지용구 사업소는 복지용구의 기능, 안전성 및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방법의 지도, 수리 등을 실시한다.
- ③ 급여방식
 - 복지용구 급여방식은 구입 및 대여방식이 있다. 구입방식은 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며, 대여방식은 대여품목 8종에 대해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한 후 반납하는 방식을 말한다.
- ④ 급여산정
 - 4-1.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, 설치·철거비,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, 세정 및 소독 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. 4-2. 수급자가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월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.

4-3. 본인부담금

- 복지용구는 물품 가격의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에 법정 본인 부담률(일반: 15%, 경감: 6%, 9% 의료대상자: 6% , 기초생활수급자: 0%)을 적용하여 산정하며, 공단부담금은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한다.

⑤ 연간한도액

- 5-1.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.
- 5-2. 연 한도액(공단부담금+본인부담금)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(이하 "유효기간"이라 한다) 개시일부터 매 1년으로 한다. 다만,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.
- 5-3.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.

제5조(이용계약에 관한 사항)

- ①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.
-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, 2등급, 3등급, 4등급, 5등급자를 우선적으로 1년간(등급유효기간) 범위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확정될 때 급여제공은 시작되며 급여제공 종료는 「급여제공계약서」에 의한다.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, 판매품목은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.
- ③ 계약목적은 복지용구를 사용하여 급여제공목적을 달성하고, 낙상예방, 욕창예방, 치매예방, 재활욕구를 실현하여 수급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. 또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 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저하를 예방한다.
- ④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,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 시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.
- ⑤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.

(기관의 의무)

가.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 등 시설입소 시 회수·구분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 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.

나.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 함을 설명한다.

다.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,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.

(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와 의무)

가.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

1.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/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2.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

나.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수급자 건강·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2.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3.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, 입원·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
4.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
5.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·파손·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
⑥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(또는 보호자)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2.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3.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
⑦ 수급자(또는 보호자)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.

제6조(서비스 내용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)

본 센터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 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 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. 다만,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.

- ①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,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.
- ②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.
- ③ 일반 등급대상자는 15% 범위 내에서 일시납, 6개월 납, 연납으로 하여 부담하여야 한다.
- ④ 서비스이용 내용은 1등급, 2등급, 3등급, 4등급, 5등급을 대상으로 하며, 일반 수급자 15%, 본인부담금 감액대상자 6%~9%, 국민기초수급자 및 의료수급자는 0%로 한다.
- ⑤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.
- ⑥ 연 한도액(공단부담금+본인부담금)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.
- ⑦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.

제7조(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)

이용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- ① 센터의 시설장에게 구두 상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면,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.

② 센터에서 정기적인 수급자 상태 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.

제8조(시설물 이용 및 복지용구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)

- ① 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여제공과정에 필요한 멸균용품, 위생용품, 소독제, 기타 등의 비품 또는 장비는 급여제공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.
- ② 보행기, 휠체어, 안전손잡이, 이동변기, 침대, 자세변환도구 등 재활운동과 이동에 필요한 장비의 사용 시에는 급여제공자가 이용대상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필요에 따라 시연을 행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, 반드시 급여제공자의 조력이 있을 때에만 사용하여야 하며, 급여제공자와 이용대상자가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한 동작씩 진행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다음 동작을 진행한다. 이때 급여제공자는 이용대상자의 돌발행동에 항상 대비하여 동작을 이어 간다.

제9조(제품안내에 관한 사항)

- ① 취급제품의 홍보는 다음과 같이 한다.
 1.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제품브로셔를 기관에 비치한다.
 2.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대상자에게 제품에 대해 홍보한다.
- ② 정보게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1. 복지용구 제품을 전시하고 본인부담금액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다.
- ③ 제품의 안내는 다음과 같이 한다.
 1.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한 제품구입시 어르신들의 심신기능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안내한다.
 2. 구입제품의 경우 매장방문시 브로셔 전달 및 제품설명서를 전달하고 사용법을 안내하며 고장시 발생하는 A/S에 대한 과정을 설명한다.

제10조 [계약의 해제]

1.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(또는 보호자)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 - 1-1.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 - 1-2.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(대여제품) 1-3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2. 수급자(또는 보호자)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(사망 시-7일 이내)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.